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478호 2019. 11. 25(월)

## 차 례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1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도시관리계획(불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 공고 ----- 6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78호 공시송달공고 ----- 9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11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83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·공고 ----- 17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90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관리계획시설: 주차장, 문화시설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·공고 ----- 41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----- 52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-216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, 제23조제4항, 제24조제1항,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11. 25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변경·폐지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봉화로 42 외 11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·폐지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9.11.2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: 2019-11-25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92-5	인천광역시 서구 통좌로 42 (왕길동)	20090922	중화촌이라 불리는 자연부락을 지나는 도로이므로 자연마을의 이름을 따 명명	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
2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43-2	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로 22 (원창동)	20090922	자연무늬영이자 섬 이름을 따 명명	
3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42-5	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로 26 (원창동)	20090922	자연무늬영이자 섬 이름을 따 명명	
4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-219	인천광역시 서구 간지로97번길 33-13 (석남동)	20090922	간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5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-141	인천광역시 서구 목향로245번길 7 (원창동)	20090922	목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,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6	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9-6	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로13번길 4-2 (연희동)	20101111	연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7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0-7	인천광역시 서구 열곡로260번길 10-6 (석남동)	20090922	열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,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8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95-81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31-3 (오류동)	20081231	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9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3-6	인천광역시 서구 살천왕로33번길 10 (석남동)	20090922	살천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0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9-28	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194번길 16-10 (청라동)	20101111	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,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	
11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4-75	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1번안길 22 (청라동)	20130730	보석로11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

고시일 : 2019-11-25

연번	도로명주소	폐지 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로 19-3 (원상동)	건물주소	20090922	자연부덕명이자 섬 이름을 따 명명	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-1869호

## 인천도시관리계획(블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·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블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11. 25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# 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(변경없음)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(변경없음)
3.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 없음)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(변경있음)
  - 가. 단독주택용지(A-1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기 정					변 경(안)				
도면 번호	가 구 번호	획 지		비고	도면 번호	가 구 번호	획 지		비고
		위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	위치	면 적(m <sup>2</sup> )	
A-1	3	2	483.3		A-1	3	2-1	242.0	
							2-2	241.3	

나. 단독주택용지(A-1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3	2	획지분할	적정규모 획지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

5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6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## II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1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2. 의견제출 :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및 도면 : 게재 생략, 열람 장소에 비치
4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(☎560-5774)

## 의견서

일 시	2019. . .
성 명	
주 소	※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
연 락 처	※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
도시계획 변경사항	획지분할 (불로지구 3가구 2획지) (불로동 765-4번지)
<b>의견사항</b>	
※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.	

인천광역시 서구 제2019 - 1878호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지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. 11. 2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공고내용 :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자진정비 지시
2. 공고기간 : 2019. 11. 20. ~ 2019. 12. 4. (15일간)
3. 공고장소 :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
4. 법적근거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
5. 공시송달 대상

위치	위반행위자	위반사항			행위구분
		구조	용도	면적(㎡)	
봉오재2로 37 (가정동, LH웨스턴블루힐) 상가동 104호	중*자	조립식패널조	일반음식점 (창고)	10.23㎡	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위반 (증축)

### 6. 안내사항

- 「공동주택법」 제93조(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) 규정에 의거 자진정비 지시하오니, 2019. 12. 04.(월)까지 자진정비 완료 후 증빙자료를 우리 구(주택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(☎032-560-597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- 1879호

「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11. 21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#### ○ 법적근거 :

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-12480(2019.9.23.)호 “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” 에 의거

### 2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1조에 법령에 낫표(「」) 기재

○ 조례 제14조에 조례에서 하위 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은 불합리

### 3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의견제출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○ 의견제출할 곳 : (우22726,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))

- 인천광역시 서구청 노인복지과 (전화 560-4971, 팩스 560-274)

○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

### 4. 기 타

○ 의견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5. 참고사항

○ 의견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규칙안

##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노인복지법 제4조”를 “「노인복지법」 제4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수립시”를 “수립 시”로 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개·보수”를 “개수·보수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조례가”를 “조례로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바에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노인복지법 제4조</u> 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노인복지법</u> 」 제4조-----		
제2조(노인복지증진의 책임) ① (생략)		제2조(노인복지증진의 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구청장은 연간 종합계획 <u>수립</u> 시 사업별 지원대상, 방법, 범위 등을 포함한다.		② ----- <u>수립</u> 시 -----		
제7조(경로당 운영 지원)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.		제7조(경로당 운영 지원) -----		
1. 2. (생략)		1. 2. (현행과 같음)		
3. 경로당 시설물 <u>개·보수</u>		3. ----- <u>개수·보수</u>		
4. 5. (생략)		4. 5. (현행과 같음)		
제13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<u>조례</u>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		제13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 -----		
		<u>조례</u> 로 -----		

<p>제1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<u>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</u>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14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관계</u> <u>규정을</u> -----.</p>
---	---

<h2 style="margin: 0;">의견제출서</h2>	
1. 자치법규명	
2.	성명(단체명/대표자)
	주 소
3. 의견	
4. 기타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의견 제출인 주소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(전화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</p>	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</li> <li>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</li> <li>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/ol>

※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-1883호

##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·공고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입안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합니다.

2019. 11. 25.

#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#### 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입안(안) 주요내용

##### 가. 시설현황

- 위치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03-12번지 일원
- 내용
  - 도 로: 소로2-27호선 (9㎡ 면적감소), 소로2-30호선 (415m 연장축소)  
소로1-B (2m 폭원증가 및 25m 연장증가), 소로1-C (129m 노선신설)
  - 주차장: 위치변경
  - 녹 지: 완충녹지 (478㎡ 면적감소) 경관녹지 (1,755㎡신설)

##### 나. 입안내용

-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조서

■ 도로 결정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최 초 결정일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27	8	국지	380	중로1-54	소로2-30				
변경	소로	2	27	8	국지	380	중로1-54	소로2-30				면적 감소
기정	소로	2	30	8	국지	803	중로1-54	중로1-27	경고 제53호 (1977.3.11.)			
변경	소로	2	30	8	국지	415	소로2-27	중로1-27				
기정	소로	2	B	8	국지	29	소로2-30	소로2-27				
변경	소로	1	B	10	국지	54	주차장1	소로2-27				
신설	소로	1	C	10~12	국지	129	소로1-B	중로1-54				

■ 주차장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주차장	서구 석남동 산118-3 일원	4,613	-	4,613	서고 제2012-25호 (2012.4.23)	지하주차장
변경	주차장	서구 석남동 203-13 일원					

■ 녹지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녹지	완충녹지	서구 석남동 원장, 석남, 신현동	238,503	감) 478	238,025	건설부고시 제54호 (1970.2.9.)	-
신설	녹지	경관녹지	서구 석남동 산119-13 일원	-	증) 1,755	1,755	-	-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유서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소로2-27	소로2-27	• 면적 감소 -3,064m→3,055m(감9m <sup>2</sup> )	•소로2-30 연장축소에 따른 소로2-27의 가각구간 제척으로 면적 감소
소로2-30	소로2-30	• 연장 축소 -폭원:8m -연장:803m→415m(감388m)	•도로기능 상실에 따른 도로 일부구간 연장 축소 ⇒ 경관녹지 조성
소로2-B	소로1-B	• 연장 및 폭원 증가 -폭원: 8m→10m -연장: 29m →54m(증 25m)	•상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(복합커뮤니티센터) 연계 추진에 따른 주차장 접근도로의 연장 및 폭원 확장
-	소로1-C	• 노선신설 -폭원: 10m~12m, 연장: 129m	•상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(복합커뮤니티센터) 연계 추진에 따른 노선 신설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주차장	▶ 변경 - 위치 : 서구 석남동 산118-3번지 일원 → 서구 석남동 203-13번지 일원	• 상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(복합커뮤니티센터) 사업계획 반영

■ 녹지 변경사유서

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완충녹지	▶ 변경 - 위치: 서구 원창, 석남, 신현동 - 면적: 238,503㎡ → 238,025㎡ 감) 478㎡	• 도시계획도로(소로1-B, 소로1-C) 계획변경에 따른 면적감소
경관녹지	▶ 신설 - 위치: 서구 석남동 산119-13일원 - 면적: 1,755㎡	• 도로연장이 축소된 구간을 주거지역 경관 개선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관녹지로 신규조성

## 2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가.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나. 의견제출: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

3. 열람장소: 인천광역시 서구청(도시개발과, 032-560-4762).

4. 관계도서: 게재 생략(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)

○ **관계기관(부서) 협의내용(도로, 주차장, 녹지 결정(변경) 입안(안))**

협의기관	부 서	협 의 내 용	비 고
인천광역시	시설계획과	○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,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관련 사항	
	공원조성과	○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,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관련 사항	
서구	환경관리과	○환경성 검토 등 환경분야에 관한 사항	
	경제에너지과	○농지전용에 관한 사항	
	교통정책과	○교통성 검토 등 교통분야에 관한 사항	
	주차관리과	○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,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관련 사항	
	도시기반과	○공유재산(무상귀속 등)에 관한 사항 ○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,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관련 사항	
	도시재생경관과	○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,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관련 사항 ○경관성 검토 등 경관분야에 관한 사항	
	공원녹지과	○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,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관련 사항 ○산지전용에 관한 사항	
	기타부서	○기타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	



# 도시관리계획(시설 : 도로,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(안)

–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03-12번지 일원 –

2019. 11



인천광역시 서구

## 목 차

계획의 목적 및 주요내용

위 성 사 진

대 상 지 현 황 사 진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(안)

교 통 처 리 계 획

편 입 토 지 조 서

## 계획의 목적

- 인천 서구 석남동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시행시 종 · 횡단 단차 제약요소 개선
- 상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
-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, 녹지)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

## 계획의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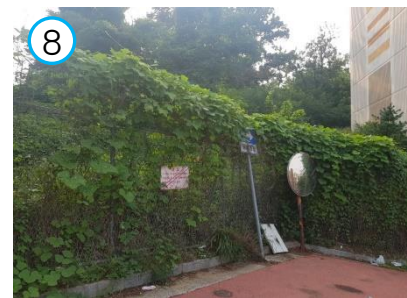
- 시설명 :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, 녹지)
-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33-3번지 일원
- 용도지역 : 자연녹지지역
- 제안사항
  -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: 도로, 주차장, 녹지
  - 도로 : 소로 4개노선
  - 주차장 : 1개소
  - 녹지 : 완충녹지, 경관녹지 각 1개소
- 사업기간 : 2019. ~ 2020.
- 사업비 : 2,240백만원(시비50%, 구비 50%)
-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# 위성사진



## 대상지 현황사진



#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## 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최 소 결정일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27	8	국지	380	중로1-54	소로2-30				
변경	소로	2	27	8	국지	380	중로1-54	소로2-30				면적 감소
기정	소로	2	30	8	국지	803	중로1-54	중로1-27	경고 제53호 (1977.3.11.)			
변경	소로	2	30	8	국지	415	소로2-27	중로1-27				
기정	소로	2	B	8	국지	29	소로2-30	소로2-27				
변경	소로	1	B	10	국지	54	주차장1	소로2-27				
신설	소로	1	C	10~12	국지	129	소로1-B	중로1-54				

## ▶ 도로 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소로2-27	소로2-2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면적 감소</li> <li>- 3,064m → 3,055m(감9m<sup>2</sup>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로2-30 연장축소에 따른 소로2-27의 가각구간 제척으로 면적 감소</li> </ul>
소로2-30	소로2-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연장 축소</li> <li>- 폭원: 8m</li> <li>- 연장: 803m → 415m(감388m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도로기능 상실에 따른 도로 일부구간 연장축소 ⇒ 경관녹지 조성</li> </ul>
소로2-B	소로1-B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연장 및 폭원 증가</li> <li>- 폭원 : 8m → 10m</li> <li>- 연장 : 29m → 54m(증 25m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상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(복합커뮤니티센터) 연계 추진에 따른 주차장 접근도로의 연장 및 폭원 확장</li> </ul>
-	소로1-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노선신설</li> <li>- 폭원 : 10m ~ 12m</li> <li>- 연장 : 129m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상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(복합커뮤니티센터) 연계 추진에 따른 노선 신설</li> </ul>

## 나.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1	주차장	서구 석남동 산118-3 일원	4,613	-	4,613	서고 제2012-25호 (2012.4.23)	지하주차장
변경	1	주차장	서구 석남동 203-13 일원					

### ▶ 주차장 변경 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주차장	▶ 위치변경 - 위치 : 서구 석남동 산118-3번지 일원 → 서구 석남동 203-13번지 일원	· 상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(복합커뮤니티센터) 사업계획 반영

## 다. 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녹지	완충녹지	서구 원창, 석남, 신현동	238,503	감) 478	238,025	건설부고시 제54호 (1970.2.9.)	-
신설	2	녹지	경관녹지	서구 석남동 산119-13 일원	-	증) 1,755	1,755	-	-

### ▶ 녹지 변경 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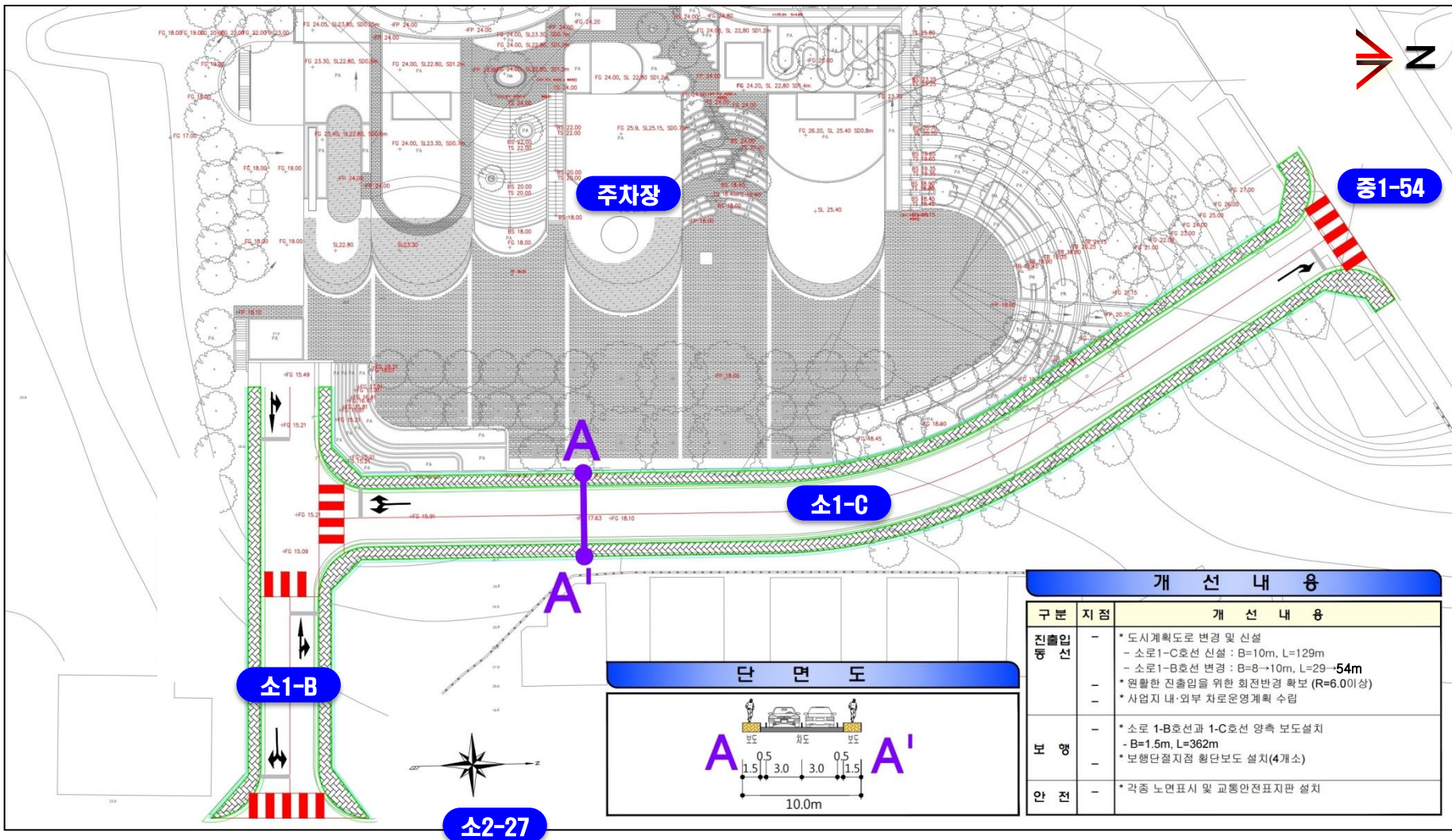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 용	변경 사유
1	완충녹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변경</li> <li>- 위치 : 서구 원창, 석남, 신현동</li> <li>- 면적 : 238,503m<sup>2</sup> → 238,025m<sup>2</sup> 감) 478m<sup>2</sup></li> </ul>	· 도시계획도로(소로1-B, 소로1-C) 계획변경에 따른 면적감소
2	경관녹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신설</li> <li>- 위치 : 서구 석남동 산119-13일원</li> <li>- 면적 : 1,755m<sup>2</sup></li> </ul>	· 도로연장이 축소된 구간을 주거지역 경관개선 및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관녹지로 신규조성



## 도시관리계획결정도 (변경안)



# 교통처리계획도





## 편입 토지 조서 - 소로1-B호선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
						성명	주소
1	석남동	202-12	대	234	19	한희복	인천광역시 서구 울도로16번길 16(석남동)
2	석남동	203-3	도	355	31	인천광역시 서구	
3	석남동	203-12	임	11,747	258	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(주)	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(원창동)
4	석남동	203-13	임	10,841	178	인천광역시 서구	
5	석남동	433-3	구	685	78	국토교통부	
합계				23,862	564		

## 편입 토지 조서 - 소로1-C호선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
						성명	주소
1	석남동	201	전	863	342	인천광역시 서구	
2	석남동	201-6	전	642	172	인천광역시 서구	
3	석남동	203-12	임	1174	146	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(주)	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(원창동)
4	석남동	203-13	임	10841	161	인천광역시 서구	
5	석남동	433-3	구	685	157	국토교통부	
6	석남동	433-20	구	425	223	인천광역시 서구	
7	석남동	433-21	구	34	9	기획재정부	
8	석남동	산117-12	임	232	91	인천광역시 서구	
9	석남동	산117-23	임	66	13	인천광역시 서구	
합계				14,962	1,314		

## 편입 토지 조서 - 경관녹지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
						성명	주소
1	석남동	203-11	전	101	101	인천광역시 서구	-
2	석남동	203-12	임	1,174	217	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(주)	서구 봉수대로 415(원창동)
3	석남동	205-10	답	159	159	인천광역시 서구	-
4	석남동	206-4	도	1,295	13	인천광역시 서구	-
5	석남동	206-10	전	729	30	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(주)	서구 봉수대로 415(원창동)
6	석남동	434	도	566	29	국(국토교통부)	-
7	석남동	산119-13	임	877	877	권경자	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-17 타워펠리스 에프동 4602호
8	석남동	산119-14	임	329	329	조규중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7번길 30(원미동)
합계				13,070	1,755		

## 편입 토지 조서 - 주차장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
						성명	주소
1	석남동	203-13	임	10,841	4,613	인천광역시 서구	
합계				10,841	4,613		

## 조성 후 조감도 (예시)

### ▶ 주차장 (지상부 : 복합 커뮤니티센터)



### ▶ 경관녹지



**감 사 합 니 다**

## 의견서

일 시	2019. . .
성 명	
주 소	※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
연 락 처	※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
도시계획 변경사항	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
<b>의견사항</b>	
※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.	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-1890호

##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, 문화시설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·공고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, 문화시설) 결정(변경) 입안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합니다.

2019. 11. 25.

#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#### 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입안(안) 주요내용

가. 시설명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문화시설)

○ 위치: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39-3번지 일원

나. 입안내용

○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, 문화시설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폐지	주차장	-	서구 가좌동 139-3번지 일원	1,848.9	감)1,848.9	-	서고제2009-68호 (2009.12.9)	
폐지	문화시설	어린이도서관	서구 가좌동 139-3번지 일원	990	감) 990	-	〃	
신설	체육시설	국민체육센터	서구 가좌동 139-3번지 일원	-	증)2,838.9	2,838.9	-	

## 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유서

시 설 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주차장	•주차장 폐지 •면적 : 1,848.9㎡	•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주차장 폐지
문화시설	•문화시설 폐지 •면적 : 990㎡	•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문화시설 폐지
체육시설	•체육시설 신설 •면적 : 2,838.9㎡	•열악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건전한 체육활동 장려 및 시민 스포츠여가활동 제공을 위한 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체육시설 신설

**2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**

가.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나. 의견제출: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

**3. 열람장소: 인천광역시 서구청(도시개발과, 032-560-4762)****4. 관계도서: 게재 생략(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)**

○ **관계기관(부서) 협의내용(주차장, 문화시설) 결정(변경) 입안(안)**

협의기관	부 서	협 의 내 용	비 고
인천광역시	시설계획과	○ 도시관리계획(시설: 주차장, 문화시설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관련 사항	
서구	문화관광체육과	○ 도시관리계획(시설: 주차장, 문화시설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관련 사항	
	환경관리과	○ 환경성 검토 등 환경분야에 관한 사항	
	교통정책과	○ 교통성 검토 등 교통분야에 관한 사항	
	주차관리과	○ 도시관리계획(시설: 주차장, 문화시설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관련 사항	
	도시재생경관과	○ 경관성 검토 등 경관분야에 관한 사항	
	기타부서	○ 기타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	

#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체육시설) 결정(변경) [안]

- 가좌동 139-3번지 일원, 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-

- 2019. 11 -



# 1 계획의 개요

## ① 개요

- 사업명 : 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 
(사업비: 약 100억원, 사업기간: ~2021년)
- 위 치 : 서구 가좌동 139-3, 139-49번지 일원
- 면 적 : 2,838.9㎡
- 도시계획현황  
- 준공업지역, 주차장(1,848.9㎡), 문화시설(990㎡)

## ② 배경 및 목적

- 구도심 지역인 가좌동에 복합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
- 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하여,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과 문화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

## ③ 대상지 및 주변 항공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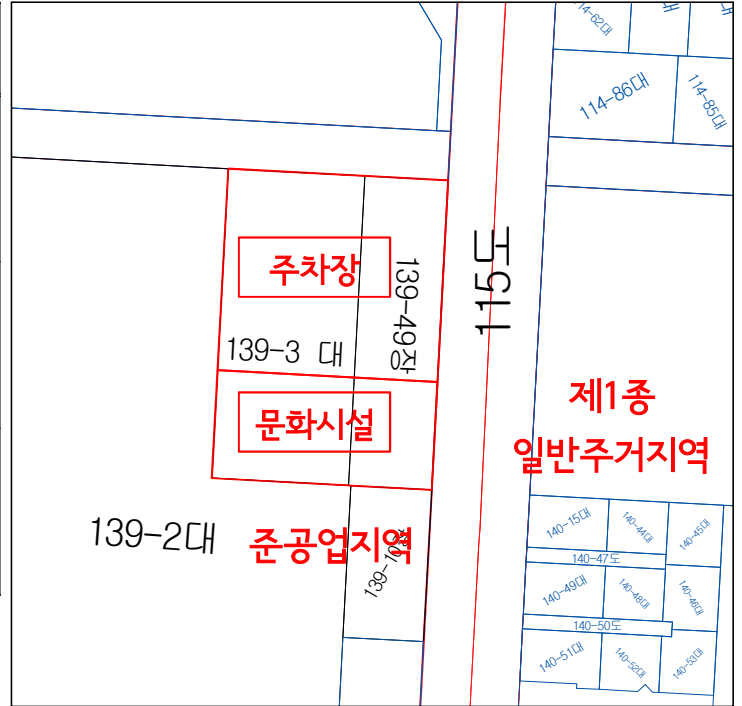


## ③ 추진경위

- 2018. 11. 03. : 복합체육관 건립계획 수립
- 2018. 11. 20. : 지방재정투자심사(인천시) 심의완료
- 2018. 12. 26. :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지원사업확정
- 2019. 07. 11. : 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 
건축설계공모
- 2019. 09. 20. : 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 
건축설계심사 결과발표

4 토지이용

지번	지목	면적 (㎡)	도시계획현황	토지 이용
139-3	대	1,764.6	·용도지역: 준공업지역 ·도시계획시설 -주차장: 1,149.3㎡ -문화시설: 615.3㎡	나대지
139-49	장	1,074.3	·용도지역: 준공업지역 ·도시계획시설 -주차장: 699.6㎡ -문화시설: 374.7㎡	나대지
계		2,838.9	·용도지역: 준공업지역 ·도시계획시설 -주차장: 1,848.9㎡ -문화시설: 990.0㎡	



● 토지소유자 : 인천광역시서구 (2017.07.04.)

현장사진



## 2 건축 계획(안)

### 1 건축 개요

건축물 용도	운동시설	
대지면적	2,838.9 m <sup>2</sup>	
건축면적	1,567.02 m <sup>2</sup>	
건폐율	55.20 %	(법정 70% 이하)
연면적	지상	3,223.51 m <sup>2</sup>
	지하	272.79 m <sup>2</sup>
	합계	3,496.30 m <sup>2</sup>
용적률	113.55 %	(법정 400% 이하)
규모	지하 1층, 지상 3층 / 높이 17.23m	
주차계획	자동차 33대 (일반형 29대, 장애인 1대, 경형 3대) 자전거 15대	
구조	철근콘크리트조, 철골철근콘크리트조	
조경면적	759.47 m <sup>2</sup> (27%)	

###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

총계	운동시설	3,496.30m <sup>2</sup>
지하 1층	기계실, 전기실, 발전기실, 중앙감시실 등	272.79m <sup>2</sup>
	수영장 및 부대시설	754.2m <sup>2</sup>
	샤워/탈의실	155.46m <sup>2</sup>
1층	용역원실, 공용	252.37m <sup>2</sup>
	<b>1층 계</b>	<b>1,182.42m<sup>2</sup></b>
	체력단련실 및 부대시설	232.56m <sup>2</sup>
2층	키즈카페	112.92m <sup>2</sup>
	카페/관람라운지, 공용	234.16m <sup>2</sup>
	<b>2층 계</b>	<b>579.64m<sup>2</sup></b>
3층	다목적체육관 및 부대시설	778.53m <sup>2</sup>
	체육동호회실	55.08m <sup>2</sup>
	작은도서관	312.48m <sup>2</sup>
	운영사무실, 센터장실	109.56m <sup>2</sup>
	탕비실 등	205.80m <sup>2</sup>
	<b>3층 계</b>	<b>1,461.45m<sup>2</sup></b>

### 컨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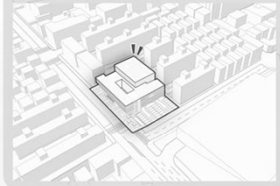
#### 인천 서구 체육·문화공간의 중심점, ‘플랫폼 + 폼 (PLATE + FORM)’

첫 번째, 고밀도의 답답한 도심 속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힘을 의미하는 평상(平床, PLATE+FORM)과 같은 편안하고 상징적인 오브제를 제안한다. 상징적인 오브제 속에는 주민들이 일상을 공유함과 동시에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공간들이 계획되어 체육·문화 공간의 중심점이 될 기초틀, 즉, 플랫폼(PLATFORM)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형성 및 삶의 균형을 맞추는 초석이 될 것이다.

#### ■ 디자인 개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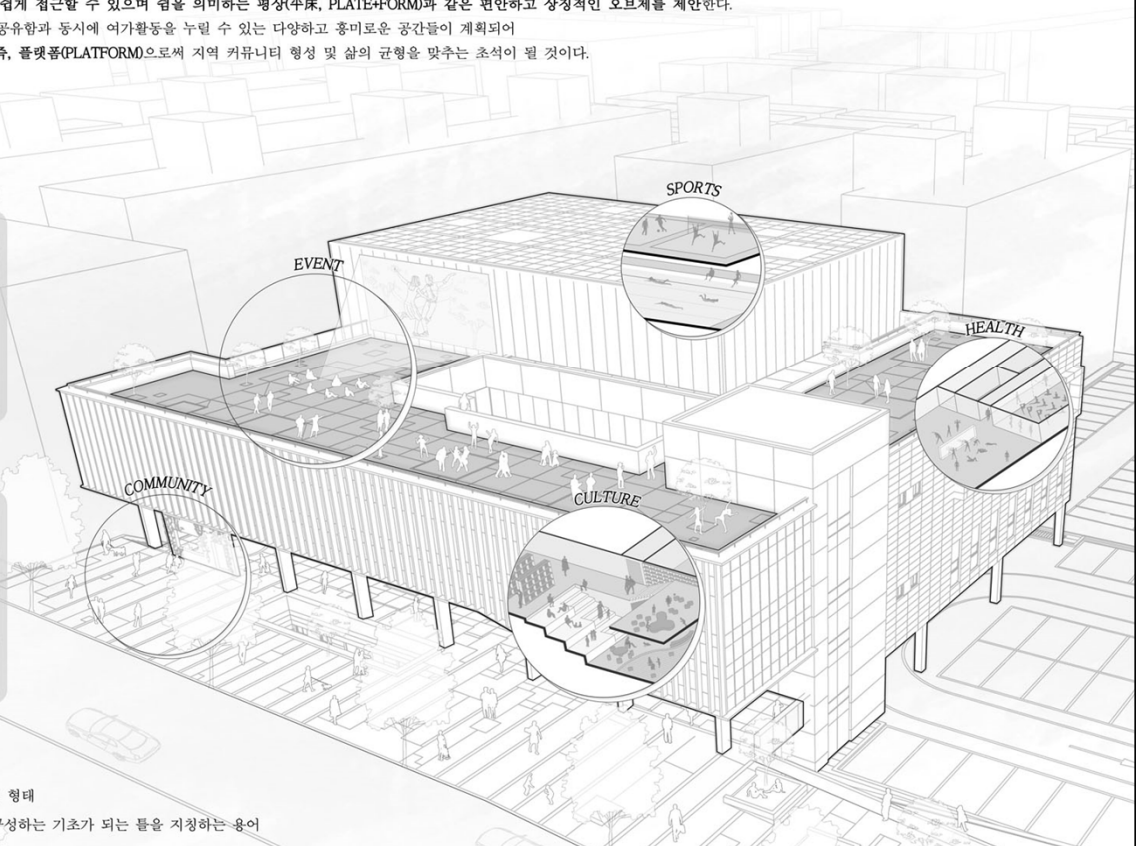
도심 속에 놓인 평상(平床, PLATE + FORM)

고밀도 도심 속 새로운 휴게공간



체육·문화의 중심 플랫폼(PLATFORM)

지역 주민들을 엮어주는 여가활동의 장



1 PLATE (판) + FORM (형태) \_넓은 판의 형태

2 PLATFORM (플랫폼) \_특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을 지칭하는 용어



### 3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(안)

####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##### ● 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문화시설, 체육시설)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폐지	1	주차장	-	서구 가좌동 139-3번지 일원	1,848.9	감) 1,848.9	-	인천서구고시 제2009-68호 (2009.12.9)	
폐지	1	문화시설	어린이 도서관	서구 가좌동 139-3번지 일원	990	감) 990	-	인천서구고시 제2009-68호 (2009.12.9)	
신설	1	체육시설	국민 체육센터	서구 가좌동 139-3번지 일원	-	감) 2,838.9	2,838.9	-	

##### ● 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문화시설, 체육시설)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결정(변경) 내용	결정(변경) 사유
1	주차장	· 주차장 폐지 · 면적 : 1,848.9㎡	· 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주차장 폐지
1	문화시설	· 문화시설 폐지 · 면적 : 990㎡	· 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문화시설 폐지
1	체육시설	· 체육시설 신설 · 면적 : 2,838.9㎡	· 열악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건전한 체육활동 장려 및 시민 스포츠여가활동 제공을 위한 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체육시설 신설



## 의견서

일 시	2019. . .
성 명	
주 소	※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
연 락 처	※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
도시계획 변경사항	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문화시설) 결정(변경)
<b>의견사항</b>	
※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.	

인천광역시 서구 제2019 - 1895호

「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11. 21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#### ○ 법적근거 :

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-12480(2019.9.23.)호 “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”에 의거

### 2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6조에 「지체없이」을 「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」로 변경

- 조례 제10조에 「지방세기본법」을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로 변경

### 3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의견제출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○ 의견제출할 곳 : (우22726,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(심곡동))

-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행정과 (전화 560-5011, 팩스 560-2800)

○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

### 4. 기 타

○ 의견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5. 참고사항

○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

##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지체 없이”를 “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”을 “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이의신청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<u>지체 없이</u> 인천지방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준용규정)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지방세기본법」을 따른다.</p>	<p>제6조(이의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 <u>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</u> ----- -----.</p> <p>제10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----- 「<u>질서위반 행위규제법</u>」--.</p>

## 실·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기타 문제점		
실·과별 의견			
협의개요	실·과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2019.11.25.~12.17. ○ 내 용 - 의견수렴	-	-	-
입 법 예 고			
협의개요	제 출 자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2019.11.25.~12.17. ○ 내 용 - 구보게재 - 인터넷	-	-	-